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473호 2019. 2. 21. (목)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9-2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.....3
- 정선군 고시 제2019-2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.....5
- 정선군 고시 제2019-26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,도로,완충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.....9
- 정선군 고시 제2019-27호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.....32
- 정선군 고시 제2019-28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·고시.....36
- 정선군 고시 제2019-3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.....37
- 정선군 고시 제2019-35호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.....38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9-156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.....40
- 정선군 공고 제2019-199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.....43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9-22호

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2일

정 선 군 수

지구명	위 치	해제 내용			해제사유	비 고 (지정일자)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고한11리	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0-84번지 일원	붕괴 위험	가	10,000	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 해소	2012. 4. 13.

정선군 고시 제2019-23호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2일

정 선 군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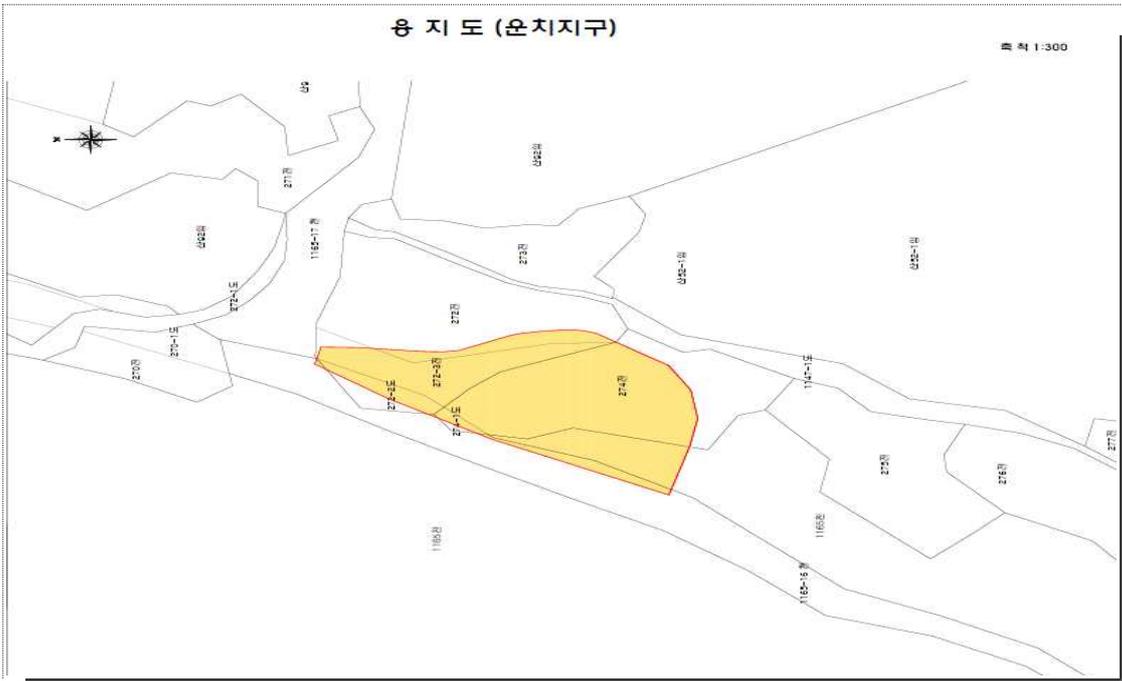
지구명	위 치	해제 내용			해제사유	비 고 (지정일자)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운치지구	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274번지 일원	붕괴 위험	D	1,757 (L=80m)	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	2018. 5. 17.

운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

위 치 도



지정 해제 도면



정선군 고시 제2019-26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,도로,완충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- 1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,도로,완충녹지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
-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2월 15일

정 선 군 수

가. 결정(변경) 취지 : 정선군의 주요 재난·재해 예방 및 의료복지서비스 핵심기관인 소방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수요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 개설된 도로의 현황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

나. 위치 : 정선군 정선읍, 북평면 일원

다.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▪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2	공공 청사	소방서	정선읍 봉양리 80번지 일원	-	증) 8,069	8,069	-	
신설	3	공공 청사	보건소	정선읍 봉양리 80-5번지 일원	-	증) 8,149	8,149	-	

▪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2	공공청사 (소방서)	· 신설 A=8,069㎡	· 정선군의 주요 재해재난 예방 및 관리의 핵심기관인 정선소방서에 대한 지속적인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필요성에 따라 지역내 소방안전향상의 여건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
3	공공청사 (보건소)	· 신설 A= 8,149㎡	· 정선군의 의료복지서비스 핵심기관인 정선 보건소에 대하여 의료 복지 수요 증대에 대응한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 (공공청사) 결정

▪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1	1	20	보조 간선 도로	2,525	중로1-2 북평리822-3전	중로1-2 북평리64-1전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소로	1	7	10		2,525	중로1-2 북평리822-16전	중로1-2 북평리64-1전				
기정	소로	3	20	6	국지 도로	72	중로1-1 북평리820-8장	북평면 농촌우수처리장 북평리819-12잡	일반 도로	-	정선군 고시2010-96호 (2010-07-09)	
변경	소로	3	20	6		77	중로1-1 북평리820-8장	북평면 농촌우수처리장 북평리819-12잡				
기정	중로	2	6	15	보조 간선 도로	456	중로1-1 북평리811-2답	중로2-1 북평리764전	일반 도로	두부 공장	정선군 고시2003-42호 (2003-05-09)	
변경	중로	2	6	15		461	중로1-1 북평리811-2답	중로2-1 북평리764전				
기정	중로	2	1	15	보조 간선 도로	1,308	중로1-1 북평리149-51전	중로1-1 북평리781전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중로	2	1	15		1,330	중로1-1 북평리149-51전	중로1-1 북평리781전				
기정	소로	2	24	8	국지 도로	280	중로2-1 북평리761-9전	중로1-1 북평리734전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소로	2	24	8		284	중로2-1 북평리761-9전	중로1-1 북평리734전				
기정	소로	2	25	8	국지 도로	263	중로2-1 북평리755-3전	중로1-1 북평리731-2전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소로	2	25	8		268	중로2-1 북평리755-3전	중로1-1 북평리731-2전				
기정	중로	2	2	15	보조 간선 도로	437	중로1-1 북평리727-3전	완충녹지1 북평리665-7전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중로	2	2	15		445	중로1-1 북평리727-3전	완충녹지1 북평리665-7전				
기정	중로	2	3	15	보조 간선 도로	110	중로1-1 북평리727-1제	남측구역계 북평리876천	일반 도로	-	정선군 고시2003-42호 (2003-05-09)	
변경	중로	2	3	15		115	중로1-1 북평리727-1제	남측구역계 북평리876천				
기정	중로	2	5	15	보조 간선 도로	208	중로1-1 북평리710-4대	중로2-1 북평리696-24답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중로	2	5	15		212	중로1-1 북평리710-4대	중로2-1 북평리696-24답				
기정	소로	3	13	6	국지 도로	72	중로1-1 북평리179-21대	소로2-19 북평리702-5대	일반 도로	-	정선군 고시2003-42호 (2003-05-09)	
변경	소로	3	13	6		78	중로1-1 북평리179-21대	소로2-19 북평리702-5대				
기정	중로	3	1	12	집산 도로	359	중로1-1 북평리179-94도	소로1-2 북평리250-21철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중로	3	1	12		370	중로1-1 북평리179-94도	소로1-2 북평리250-21철				
기정	소로	2	15	8	국지 도로	137	중로2-1 북평리204-38전	중로1-1 북평리179-86제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소로	2	15	8		146	중로2-1 북평리204-38전	중로1-1 북평리179-86제				
기정	중로	3	2	12	집산 도로	775	중로1-1 북평리149-51전	중로2-2 북평리665-10전	일반 도로	북평 면사 무소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중로	3	2	12		776	중로1-1 북평리149-51전	중로2-2 북평리665-10전				
기정	소로	2	8	8	국지	207	중로1-1	소로1-2	일반	-	강원도	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변경	소로	2	8	8	도로	215	북평리149-59전 중로1-1 북평리149-59전	북평리124-4답 소로1-2 북평리124-4답	도로		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기정	소로	1	2	10	집산 도로	775	중로1-1 북평리135-2답	중로2-4 북평리686-4답	일반 도로	-	강원도 고시1986-67호 (1986.06.07)	
변경	소로	1	2	10		782	중로1-1 북평리135-2답	중로2-4 북평리686-4답				
기정	소로	2	16	8	국지 도로	470	중로1-2 북평리산189-6임	중로1-1 북평리117답	일반 도로	-	정선군 고시2003-42호 (2003-05-09)	
변경	소로	2	16	8		476	중로1-2 북평리산189-6임	중로1-1 북평리117답				

▪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 1-1	소로1-7	• 폭원 변경 (20m → 10m)	• 현황도로와 계획도로가 상이하고, 계획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하여 재산권 피해의 우려가 있어 현황도로에 맞게 폭원 변경
소로3-20	소로3-20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72m → 77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중로2-6	중로2-6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456m → 461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중로2-1	중로2-1	• 시중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1,308m → 1,330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중점 변경
소로2-24	소로2-24	• 종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280m → 284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종점 변경
소로2-25	소로2-25	• 종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263m → 268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종점 변경
중로2-2	중로2-2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437m → 445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중로2-3	중로2-3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110m → 115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중로2-5	중로2-5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208m → 212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소로3-13	소로3-13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72m → 78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중로3-1	중로3-1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359m → 370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소로2-15	소로2-15	• 종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137m → 146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종점 변경
중로3-2	중로3-2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775m → 776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소로2-8	소로2-8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207m → 215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소로1-2	소로1-2	• 시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775m → 782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시점 변경
소로2-16	소로2-16	• 종점 변경 • 노선 연장 (470m → 476m)	• 중로1-1호 폭원변경에 따라 접속부 종점 변경

▪ 완충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	녹지	완충 녹지	북평면 북평리 269-42대 일원	5,180	증) 51	5,231	강고 제67호 (86.6.7)	

▪ 완충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경사유
4	완충녹지	• 면적 변경 (증 51㎡)	• 현황도로에 맞춰 폭원 변경되는 중로 1-1호선 변으로 도로 폭원 축소 구간에 완충녹지 확장

라.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
정선군 고시 제2019-27호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강원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2월 15일

정 선 군 수

- 가. 결정(변경) 취지 :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변여건 및 지역 현황을 반영한 군계획시설 등 정비를 통하여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, 기 개설된 소로3-1호선의 변경을 통하여 군계획시설의 계획적·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- 나. 건 명 : 1)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2-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2) 정선 군관리계획(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3)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
- 다. 위 치 : 1)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
2)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-2번지 일원
3)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3번지 일원
- 라. 면 적 : 1) 51,933㎡(변경없음)
2) 96,779㎡(변경없음)
3) L=249m → 222m(감 27m), B=6m
- 마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별첨조서 참조
- 바. 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도 : 실음생략

정선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1. 정선 군관리계획(고한2-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 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⑧	고한리2-3 지구단위계획구역	고한읍 고한리 106-1대 일원	51,933	-	51,933	강고 제77호 (2002.4.8)	

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51,933	-	51,933	100.0	
일반상업지역	51,933	-	51,933	100.0	

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. 교통시설

가. 도로

1) 도로 결정(변경) 총괄표

구분		합계		1류		2류		3류	
	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
합계	기정	8	1,458	1	53	4	1,132	3	273
	변경	9	1,485	1	53	5	1,159	3	273
중로	기정	2	691	-	-	1	663	1	28
소로	기정	6	767	1	53	3	469	2	245
	변경	7	794	1	53	4	496	2	245

2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2	7	16	보조 간선 도로	1,953 (663)	8호 광장 고한리274-181천	5호 광장 고한리274천	일반 도로	고한역	건고 제294호 (1973.7.12)	
기정	중로	3	14	12	집산 도로	291 (28)	중로2-7 고한리88-2도	고한리 84-8잡	일반 도로	고한읍 사무소	강고 제2010-228호 (2010.7.23)	
기정	소로	1	12	10	국지 도로	89 (53)	중로2-7 고한리62-6도	중로3-8 고한리274천	일반 도로	고한교	강고 제2577호 (1973.12.26)	
기정	소로	2	25	8	국지 도로	195	소로1-12 고한리96-60도	소로2-26 고한리88-1도	일반 도로	고한 우체국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2	26	8	국지 도로	48	중로2-7 고한리94-23도	소로2-25 고한리91-21도	일반 도로	제일 감리교회	강고 제2577호 (1973.12.26)	
기정	소로	2	27	8	국지 도로	319 (226)	중로2-7 고한리104-115대	중로3-14 고한리91-70도	일반 도로		강고 제2577호 (1973.12.26)	
신설	소로	2	28	8	국지 도로	27	중로2-7 고한리104-75도	소로3-39 고한리91-37대	일반 도로		금회	
기정	소로	3	22	6	국지 도로	62 (17)	소로2-27 고한리274-36대	고한주거지역계 고한리274천	일반 도로		정선고 제29호 (2002.5.16)	
기정	소로	3	39	6	국지 도로	228	소로2-25 고한리88-1도	중로 2-7 고한리87-2도	일반 도로	고한 파출소	정선고 제25호 (2016.4.15)	

* ()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

☑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소로2-28	◦ 노선 신설 - B=8m, L=27m	◦ 고한18리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선 신설

나. 주차장

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-	-	-	2,425	감)236	2,189	-	
변경	⑥	고한역전1 주차장	고한읍 고한리 96-91차 일원	1,300	감)23	1,277	강고 제207호 (1998.10.15.)	
변경	⑰	고한18리 주차장	고한읍 고한리 91-36대 일원	1,125	감)213	912	정선고 제96호 (2010.7.9.)	

☑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변경	⑥	고한역전1 주차장	○면적 변경 - A=1,300㎡ →1,277㎡ (감 23㎡)	○기 결정된 주차장면적과 KLIS상 면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면적 오차를 정정함
변경	⑰	고한18리 주차장	○면적 변경 - A=1,125㎡ → 912㎡ (감 213㎡)	○고한18리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소로2-28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 계획 : 변경없음

가. 단위대지 규모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주 거 지 역	○최소개발규모 : 60㎡, 최대개발규모 : 1,000㎡	
	상 업 지 역	○최소개발규모 : 150㎡, 최대개발규모 : 2,000㎡	
	공 동 건 축	○공동건축(규제 또는 권장)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	

나. 공동건축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○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○일부 맹지형 필지	○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○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	

다. 대지분할가능선

구분	대지분할가능선	비고
기정	○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 지정	

2.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가구번호	기정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 (㎡)	비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		
합	계	32,776	-	33,519	증)743	
변경	D1	8,650	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	8,752	증)102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2	5,390	고한읍 고한리 85-3번지 일원	6,302	증)912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
구분	가구번호	기정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 (㎡)	비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		
변경	D3	2,119	고한읍 고한리 88-5번지 일원	2,272	증)153	소로2-28호선 신설에 의한 면적 감소 및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4	1,197	고한읍 고한리 88-16번지 일원	912	감)285	소로2-28호선 신설에 의한 면적 감소 및 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5	2,702	고한읍 고한리 91-25번지 일원	2,804	증)102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6	3,260	고한읍 고한리 94-1번지 일원	3,035	감)225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7	8,188	고한읍 고한리 96-57번지 일원	8,165	감)23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변경	D8	1,270	고한읍 고한리 96-76번지 일원	1,277	증)7	KLIS를 반영한 면적오차 정정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㉔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가. 불허용도

구분	건물전체 불허용도	1층 전면 불허용도
1 일반 상업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○ 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○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○ 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자재 관련업종 ○ 간이공작소 (목공소, 철공소, 알루미늄 공작업등)
2 고한 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 등
3 일반 주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○ 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 등

나. 권장용도

구분	권장용도	비고
A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탁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B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-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- 휴게음식점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- 일반음식점 - 휴게음식점 	○ 1층 권장용도
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- 도·소매시장 - 상점 	○ 전층 권장용도
E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
다. 건폐율

구분	건폐율	비고
일반주거지역	○ 60% 이하	
준주거지역	○ 70% 이하	(구)고한초교 주변
일반상업지역	○ 80% 이하	

라. 용적률

1) 용적률 계획

구분	권장용도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
중심지 형성지역	400%~500%	500%~600%	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
기타 상업지역	300%~400%	350%~550%	
주거지역	150%~300%	200%~350%	(구)고한초교 주변

2) 용적률 완화적용(Incentive)에 관한 계획

구분		완화기준	비고
허용용적률	공동건축	규제사항 ○ 30%	
		권장사항 ○ 40%	
	경사지붕의 처리	○ 20%	
	경사지붕색채	○ 10%	
	건축한계선	○ (조성면적 ÷ 총대지면적) × 기준용적률	
	전층권장용도	○ (권장용도 누계면적 ÷ 총지상연면적) × 기준용적률 × 1.5	
	1층권장용도	○ (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 ÷ 총지상연면적) × 기준용적률 × 1.5	
	공개공지	○ {(조성면적 - 설치의무면적) ÷ 총대지면적} × 기준용적률 × 1.5	
	전면공지	○ {(조성면적 - 설치의무면적) ÷ 총대지면적} × 기준용적률 × 1.5	
	공동주차장 조성	○ 기준용적률 × 0.1	
상한용적률		○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	

주 : '경사지붕의 처리'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

마. 높이

구분	최고높이	비고
중심지 형성지역	8층~12층 이하	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, (구)고한초교
기타 상업지역	8층~10층 이하	
주거지역	4층~7층 이하	(구)고한초교 주변 : 7층 이하

바. 배치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○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, 계단, 화단, 환기구,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○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, 보도와 동일한 포장,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	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D1	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D2	고한읍 고한리 85-3번지 일원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			용 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D3	고한읍 고한리 88-5번지 일원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	
		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D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50% 허용 : 550%	
			높 이	○ 10층(35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D4	고한읍 고한리 88-16번지 일원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전면도로에서 1m	
			용 도	○ 주차장(도시계획시설)	
			건폐율	○ 해당사항 없음	
			용적률	○ 해당사항 없음	
			높 이	○ 해당사항 없음	

구분	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D5	고한읍 고한리 91-25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D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~450% 허용 : 500%~550%	
			높 이	○ 10층(35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			
기정	D6	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B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~450% 허용 : 500%~550%	
			높 이	○ 10층(35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			
기정	D7	고한읍 고한리 85-3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B,D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				
기정	D8	고한읍 고한리 88-5번지 일원	용 도	○ 주차장	
			건폐율	○ 해당사항없음	
			용적률	○ 해당사항없음	
			높 이	○ 해당사항없음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축선	○ 대상지 좌측에서 2m				

⑥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: 변경없음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공개공지	○ 위치 및 조성 면적,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	○ 대형필지

나. 경관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물 외벽처리	○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	
옥외광고물	○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○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○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·표시금지 ○ 판류형 간편은 원색사용 지양	
색채	○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	
1층부 형태	○ 개구부 통일성 유지 ○ 투시형 서터 권장	
조명	○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○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	
경사형 지붕	○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○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(권장) - 주거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30% 이상 - 상업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40% 이상 - 공공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50% 이상	
투수성 포장	○ 투수성 포장재 : 흙, 잔디, 자갈, 기타 투수성 포장재 ○ 전체 포장면적의 70%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	

다.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 진출입 불허구간	○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	
공동주차 출입구	○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	
보차혼용통로	○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동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※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·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	

2.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기정	D1	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, 2m)	
기정	D2	고한읍 고한리 85-3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, 3m, 2m)	
기정	D3	고한읍 고한리 88-5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D4	고한읍 고한리 88-16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D5	고한읍 고한리 91-25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, 3m)	
기정	D6	고한읍 고한리 106-1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3m)	
기정	D7	고한읍 고한리 85-3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, 3m)	
기정	D8	고한읍 고한리 88-5번지 일원	○ 차폐조경(B=2m)	

2. 정선 군관리계획(사북리3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③	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	사북읍 사북리 344-2대 일원	96,779	-	96,779	장고 제77호 (2002.4.8)	

②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합계		96,779	-	96,779	100.0	
주거지역	소계	29,081	-	29,081	30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29,081	-	29,081	30.0	
상업지역	소계	63,835	-	63,835	66.0	
	일반상업지역	63,835	-	63,835	66.0	
녹지지역	소계	3,863	-	3,863	4.0	
	자연녹지지역	1,251	-	1,251	1.3	
	보전녹지지역	2,612	-	2,612	2.7	

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. 교통시설

가. 도로

1) 도로 결정(변경) 총괄표

구분		합계		1류		2류		3류	
	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	노선수	연장(m)
합계	기정	12	2,056	1	362	3	381	8	1,313
	변경	12	1,943	-	-	4	725	8	1,218
대로	기정	1	106	-	-	-	-	1	106
	변경	1	116	-	-	-	-	1	116
중로	기정	2	649	-	-	1	165	1	484
	변경	2	644	-	-	1	165	1	479
소로	기정	9	1,301	1	362	2	216	6	723
	변경	9	1,183	-	-	3	560	6	623

2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3	1	25	보조 간선 도로	106	중로 2-2 사북리305-8대	중로 3-1 사북리산77-3도	일반 도로	범바위골 진입부	건고 제294호 (1973.7.12)	
변경	대로	3	1	25	보조 간선 도로	116	중로 2-2 사북리304-1도	중로 3-1 사북리산77-3도	일반 도로	범바위골 진입부	건고 제294호 (1973.7.12)	
기정	중로	2	3	15	보조 간선 도로	1,720 (165)	대로 3-1 사북리305-4도	사북구역계 사북리452-36도	일반 도로	사북여중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중로	3	2	12	보조 간선 도로	903 (484)	대로 3-1 사북리산77-2도	중로 3-1 사북리366-12도	일반 도로	사북교	건고 제194호 (1976.12.7)	
변경	중로	3	2	12	보조 간선 도로	903 (479)	대로 3-1 사북리산77-2도	중로 3-1 사북리366-11도	일반 도로	사북교	건고 제194호 (1976.12.7)	
기정	소로	1	20	10	국지 도로	362	중로 3-2 사북리452천	중로 3-2 사북리372-11도	일반 도로	지장천	강고 제26호 (1979.2.8)	
변경	소로	2	53	8	국지 도로	365	중로 3-2 사북리452천	중로 3-2 사북리372-3도	일반 도로	지장천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2	2	8	국지 도로	72	중로 3-2 사북리317-181대	소로 3-37 사북리317-164대	일반 도로	사북전화국	강고 제26호 (1979.2.8)	
변경	소로	2	2	8	국지 도로	51	중로 3-2 사북리317-181대	소로 3-39 사북리317-199전	일반 도로	사북전화국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2	51	8	국지 도로	144	중로 3-2 사북리307-28대	소로 3-4 사북리307-1도	일반 도로	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3	4	6	국지 도로	499 (82)	소로 2-51 사북리452천	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산143-11임	일반 도로	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3	29	6~7	국지 도로	227	소로 3-33 사북리317-200도	중로 3-2 사북리344-6도	일반 도로	-	강고 제300호 (2003.12.13)	
기정	소로	3	33	6~7	국지 도로	91	중로 3-2 사북리317-35대	소로 3-29 사북리317-252도	일반 도로	사북읍 사무소	강고 제26호 (1979.2.8)	
기정	소로	3	34	6	국지 도로	63	중로 3-2 사북리344-55대	소로 1-20 사북리344-169대	일반 도로	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)	
변경	소로	3	34	6	국지 도로	67	중로 3-2 사북리344-55대	소로 2-53 사북리344-169대	일반 도로	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)	
폐지	소로	3	37	4.5~6	국지 도로	202	중로 3-2 사북리317-62대	소로 3-33 사북리317-166대	일반 도로	-	정선군고시 제2016-16호 (2016.3.4)	
기정	소로	3	38	6	국지 도로	58	중로 3-2 사북리317-206대	소로 1-20 사북리313-2대	일반 도로	-	정선군고시 제2016-16호 (2016.3.4)	
변경	소로	3	38	6	국지 도로	62	중로 3-2 사북리317-266대	소로 2-53 사북리313-47대	일반 도로	-	정선군고시 제2016-16호 (2016.3.4)	
신설	소로	3	39	4~6	국지 도로	94	소로 2-2 사북리317-199전	소로 3-33 사북리 317-199전	일반 도로	-	금회	

※ ()내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

☑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대로3-1	대로3-1	○연장 및 기점 변경 - L=106m → 116m (증 10m) - 기점 : 305-8번지 → 304-1번지 (합병)	○기 결정된 도로연장과 KLIS상 연장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연장오차 정정 및 기점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
중로3-2	중로3-2	○연장 및 종점 변경 - L=484m → 479m (감 5m) - 종점 : 366-12번지 → 366-11번지 (합병)	○기 결정된 도로연장과 KLIS상 연장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연장오차 정정 및 종점 토지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
소로1-20	소로2-53	○도로 위계 변경 - 소로1류 → 소로2류 ○폭원 및 연장, 종점 변경 - B=10m → 8m - L=362m → 365m (증 3m) - 종점 : 372-11번지 → 372-3번지 (오류정정)	○도로 폭원 변경에 따른 도로 위계 변경 ○소로1-20호선의 개설 실현성 제고 및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의 폭원 및 연장 변경 ○기존 종점지번 기입 오류 정정
소로2-2	소로2-2	○연장 및 종점 변경 - L=72m → 51m (감 21m) - 종점 : 317-164번지 → 317-199번지	○소로3-37호선 폐지 및 소로3-39호선 신설에 따른 연장 및 종점 변경
소로3-34	소로3-34	○연장 변경 - L=63m → 67m (증 4m)	○소로1-20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연장 변경
소로3-37	소로3-37	○노선 폐지 - B=4.5~6m, L=202m	○주변여건 및 지형현황(단차) 등을 고려하여 노선 폐지
소로3-38	소로3-38	○연장 변경 - L=58m → 62m (증 4m)	○소로1-20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연장 변경
-	소로3-39	○노선 신설 - B=4~6m, L=94m	○소로3-37호선 폐지에 따른 대체도로로써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신설

* KLIS : 한국도지정보시스템

나. 주차장

1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-	-	-	3,681	감)82	3,599	-	
변경	㉑	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45-1전	1,773	감)88	1,685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변경	㉒	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17-36대 일원	606	증)6	612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기정	㉓	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	사북읍 사북리 317-169대 일원	1,302	-	1,302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
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변경	㉔	노외 주차장	○면적 변경 - A=1,773㎡ → 1,685㎡ (감 88㎡)	○기 결정된 주차장면적과 KLIS상 면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면적 오차를 정정함
변경	㉕	노외 주차장	○면적 변경 - A=606㎡ → 612㎡ (증 6㎡)	○기 결정된 주차장면적과 KLIS상 면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면적 오차를 정정함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다. 공원

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①	사슴공원	근린공원	사북읍 사북리 산77입 일원	169,309 (1,220)	증)31	169,309 (1,251)	건고 제194호 (1976.12.7.)	

* ()내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

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변경	①	사슴공원	○면적 변경 - A=1,220㎡ → 1,251㎡ (증 31㎡)	○기 결정된 공원면적과 KLIS상 면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면적 오차를 정정함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라. 녹지

1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①	중로2-1호선변 완충녹지	완충 녹지	사북읍 사북리 344-153중 일원	26,708 (3,912)	감)190	26,708 (3,722)	강고 제83호 (2002.4.15.)	

* ()내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

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변경	①	중로2-1호선변 완충녹지	○면적 변경 - A=3,912㎡ → 3,722㎡ (감 190㎡)	○기 결정된 녹지면적과 KLIS상 면적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면적 오차를 정정함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마. 하천 : 변경없음

1) 하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		연장 (km)	폭원 (m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점	종 점	주요 경과지					
기정	㉔	하천 (북일천)	소하천	사북읍 사북1리 18번지 일원	사북읍 사북1리 306-6번지 일원	-	5.6	9~20	110,183 (2,361)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기정	㉕	하천 (햇골천)	소하천	사북읍 사북12리 342-1번지 일원	사북읍 사북12리 452-14번지 일원	-	0.5	2.8~8.8	4,537 (251)	정선군고시 제2016-25호 (2016.4.15.)	

* () 내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

4]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 계획 : 변경없음

가. 단위대지 규모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주 거 지 역	○최소개발규모 : 60㎡, 최대개발규모 : 1,000㎡	
	상 업 지 역	○최소개발규모 : 150㎡, 최대개발규모 : 2,000㎡	
	공 동 건 축	○공동건축(규제 또는 권장)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	

나. 공동건축

구분	시설명	계획내용	비고
기정	○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○일부 맹지형 필지	○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○여러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	

다. 대지분할가능선

구분	대지분할가능선	비고
기정	○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 위치 지정	

2.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가구 번호	기정면적 (㎡)	획 지		증·감 (㎡)	비고
			위 치	변경면적(㎡)		
합 계		70,519	-	72,132	증)1,613	
변경	C1	2,700	사북읍 사북리 346-1번지 일원	2,480	감)220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2	3,170	사북읍 사북리 344-45번지 일원	3,147	감)23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3	12,520	사북읍 사북리 344-4번지 일원	12,316	감)204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4	4,361	사북읍 사북리 344-17번지 일원	4,516	증)155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5	1,620	사북읍 사북리 345-4번지 일원	1,685	증)65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기정	C6	12,218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12,218	-	-
변경	C7	7,160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5,774	감)1,386	소로3-37호선 폐지 및 소로3-39호선 신설에 따른 면적 축소, 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8	12,955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13,195	증)240	소로1-20호선 축소에 따른 면적 증가 및 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9	2,670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7,077	증)4,407	소로3-37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 증가 및 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10	160	사북읍 사북리 307-37번지 일원	193	증)33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11	120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163	증)43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12	4,470	사북읍 사북리 산72-14번지 일원	4,690	증)220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13	750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866	증)116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변경	C14	486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456	감)30	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폐지	C16	2,112	사북읍 사북리 317-131번지 일원	-	감)2,112	소로3-37호선 폐지에 따른 c9로 합병
변경	C17	3,047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3,356	증)309	소로1-20호선 축소에 따른 면적 증가 및 KLIS를 반영한 면적 오차 정정

* KLIS : 한국토지정보시스템

㉔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1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가. 불허용도

구분	건물전체 불허용도	1층 전면 불허용도
1 일반 상업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○ 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○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○ 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자재 관련업종 ○ 간이공작소 (목공소, 철공소, 알루미늄 공작업등)
2 고한 1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 동
3 일반 주거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동차관련시설 (단, 주차장 제외) ○ 창고시설 ○ 공장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) ○ 학교보건법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{단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 동

나. 권장용도

구분	권장용도	비고
A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탁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B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- 휴게음식점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음식점 - 휴게음식점 	○ 1층 권장용도
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·소매시장 - 상점 	○ 전층 권장용도
E	○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	○ 전층 권장용도

다. 건폐율

구분	건폐율	비고
일반주거지역	○ 60% 이하	
일반상업지역	○ 80% 이하	

라. 용적률

1) 용적률 계획

구분	권장용도		비고
	기준용적률	허용용적률	
중심지 형성지역	400%~500%	500%~600%	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
기타 상업지역	300%~400%	350%~500%	
주거지역	150%~200%	200%~250%	

2) 용적률 완화적용(Incentive)에 관한 계획

구분		완화기준	비고
허용용적률	공동건축	규제사항 ○ 30%	
		권장사항 ○ 40%	
	경사지붕의 처리	○ 20%	
	경사지붕색채	○ 10%	
	건축한계선	○ (조성면적 ÷ 총대지면적) × 기준용적률	
	전층권장용도	○ (권장용도 누계면적 ÷ 총지상연면적) × 기준용적률 × 1.5	
	1층권장용도	○ (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 ÷ 총지상연면적) × 기준용적률 × 1.5	
	공개공지	○ {(조성면적 - 설치의무면적) ÷ 총대지면적} × 기준용적률 × 1.5	
	전면공지	○ {(조성면적 - 설치의무면적) ÷ 총대지면적} × 기준용적률 × 1.5	
	공동주차장 조성	○ 기준용적률 × 0.1	
상한용적률		○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	

주: '경사지붕의 처리' 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

마. 높이

구분	최고높이	비고
중심지 형성지역	8층~12층 이하	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
기타 상업지역	4층~10층 이하	
주거지역	4층 이하	

바. 배치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○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, 계단, 화단, 환기구,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○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, 보도와 동일한 포장,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	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1	사북읍 사북리 346-1번지 일원	용도	○ 불허용도 3	
			건폐율	○ 6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200% 허용 : 250%	
			높이	○ 4층(12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2	사북읍 사북리 344-45번지 일원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	
			용도	○ 불허용도 3	
			건폐율	○ 6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200% 허용 : 250%	
			높이	○ 4층(12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3	사북읍 사북리 344-4번지 일원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	
			용도	○ 불허용도 3	
			건폐율	○ 6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200% 허용 : 250%	
			높이	○ 4층(12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4	사북읍 사북리 344-17번지 일원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해당사항 없음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높이	○ 4층(12m)이하	
			용적률	○ 기준 : 200% 허용 : 250%	
			건폐율	○ 60%	
기정	C5	사북읍 사북리 345-4번지 일원	용도	○ 불허용도 3	
			건축선	○ 전면도로에서 1m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높이	○ 4층(12m)이하	
			용적률	○ 기준 : 200% 허용 : 250%	
기정	C6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건폐율	○ 80%	
		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높이	○ 8층(28m)이하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
구분	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7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용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지구단위 계획지침도 참고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변경	C7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지구단위 계획지침도 참고
			용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8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전면도로에서 1m	
			용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9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지구단위 계획지침도 참고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전면도로에서 1m	
			용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이	○ 8층(28m)이하	
변경	C9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지구단위 계획지침도 참고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전면도로에서 1m, 보차혼용통로	
			용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기정	C10	사북읍 사북리 307-37번지 일원	높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건축선	○ 해당사항 없음	
			용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
구분	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획내용	비고
기정	C11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12	사북읍 사북리 산72-14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50% 허용 : 550%	
			높 이	○ 10층(35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13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용 도	○ 공개공지	
			건폐율	○ 해당사항 없음	
			용적률	○ 해당사항 없음	
			높 이	○ 해당사항 없음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14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폐지	C16	사북읍 사북리 317-131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C9로 합병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기정	C17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용 도	○ 불허용도 1 / 권장용도 C	
			건폐율	○ 80%	
			용적률	○ 기준 : 400% 허용 : 500%	
			높 이	○ 8층(28m)이하	
			배 치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형 태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			색 채	○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	
건축선	○ 보차혼용통로, 전면도로에서 1m				

⑥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내용 : 변경없음

가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공개공지	○ 위치 및 조성 면적,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	○ 대형필지

나. 경관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건축물 외벽처리	○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	
옥외광고물	○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○ 지주형 간편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○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·표시금지 ○ 판류형 간편은 원색사용 지양	
색채	○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	
1층부 형태	○ 개구부 통일성 유지 ○ 투시형 서터 권장	
조명	○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○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	
경사형 지붕	○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○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(권장) - 주거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30% 이상 - 상업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40% 이상 - 공공용도 : 옥상 전체면적의 50% 이상	
투수성 포장	○ 투수성 포장재 : 흙, 잔디, 자갈, 기타 투수성 포장재 ○ 전체 포장면적의 70%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	

다.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 진출입 불허구간	○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	
공동주차 출입구	○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	
보차혼용통로	○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※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·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	

2.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 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기정	C1	사북읍 사북리 346-1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)	
기정	C2	사북읍 사북리 344-45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3m), 공개공지	
기정	C3	사북읍 사북리 344-4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C4	사북읍 사북리 344-17번지 일원	○ 공개공지	
기정	C5	사북읍 사북리 345-4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C6	사북읍 사북리 344-67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, 3m)	
기정 변경	C7	사북읍 사북리 317-191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), 공동주차출입구 ○ 보차혼용통로(B=4m) 폐지, 공동주차출입구	도면 참조
기정	C8	사북읍 사북리 317-108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)	
기정 변경	C9	사북읍 사북리 317-64번지 일원	○ 공동주차출입구 ○ 보차혼용통로(B=2m), 공동주차출입구	도면 참조
기정	C10	사북읍 사북리 307-37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1	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기정	C12	사북읍 사북리 산72-14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)	
기정	C13	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	○ 공개공지	
기정	C14	사북읍 사북리 344-133번지 일원	○ 해당사항 없음	
폐지	C16	사북읍 사북리 317-131번지 일원	○ 공동주차출입구 ※ 소로 3-37호선 폐지로 인한 블록 폐지	
기정	C17	사북읍 사북리 313-11번지 일원	○ 보차혼용통로(B=4m), 공동주차출입구	

3. 정선 군관리계획(군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

① 군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	6	국지 도로	249	소로 2-1 사북리 299-1도	선명APT주거지역계 사북리 304-8대	일반 도로	사북 APT	강고제26호 (1979.2.8)	
변경	소로	3	1	6	국지 도로	234	소로 2-1 사북리 299-1도	사북APT 사북리 303대	일반 도로	사북 APT	강고제26호 (1979.2.8)	

☑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3-1	소로3-1	○ 선형 및 연장 변경 - L=249m → 234m (감 15m)	○ 사북아파트 내 차량진입 방지시설(볼라드) 및 주차장 부지를 노선에서 제외하고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아파트와 이격하여 선형 및 연장 변경

정선군 고시 제2019-28호

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·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,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,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입산통제(등산로 폐쇄)구역 및 화기·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1일

정 선 군 수

1. 입산통제기간

- 봄 철 : 2019. 02. 11 ~ 2019. 05. 15.
- 가을철 : 2019. 11. 01 ~ 2019. 12. 15.

※ 산불조심 기간 중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.

2. 통제구역 지정목적 : 산불예방, 산림보호

3.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: “붙임” 참조

- 가. 입산통제구역 :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20번지 외 8,376필 12,768ha
- 나. 등 산 로 : 32개구간 142.0km

4. 재고시 사유 : 등산로 폐쇄구간 일부 변경에 따른 재고시

5. 기타사항

- 가.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,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- 나.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및 화기, 인화물질·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
- 다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「산림보호법」 제5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처분을 받습니다.

라. 다만 『산림보호법』 제15조제3항 및 『동법시행규칙』 제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) 조림, 숲가꾸기, 사방, 벌채,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2) 산불예방,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3)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4) 학술 연구·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5)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
- 6)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7)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8)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9) 송·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·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
- 10) 문화재(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조사, 연구, 보존·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

마.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산림과(033-560-2157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등산로 개방·폐쇄 구분 내역

소재지			등산로		총거리 (km)	개폐 여부
읍면	리	산 명 (등산로명)	노선번 호	구 간		
합계		32개산	41개노 선		142. 0	
정선읍	북실리	조양산	01	성불사입구-정상-신월리	5.8	개방
정선읍	북실리	병방산	01	용담슈퍼-정상-오암길방향	12.8	폐쇄
정선읍	애산리	조양산	01-01	주노선-진성주유소	1.2	개방
정선읍	애산리	조양산	01-02	진성주유소-주노선	1.4	개방
정선읍	애산리	조양산	01-03	진성주유소-주노선	1.1	개방
정선읍	애산리	애산산성	01	범바위-정상-오반리	2.5	폐쇄
정선읍	애산리	애산산성	01-01	정상삼거리-와천둔치교방향	0.3	폐쇄
정선읍	봉양리	비봉산	01	정선경찰서후문-정상	2.2	개방
정선읍	덕송리	장등산	01	조양주유소-정상-다래강변길	3.3	폐쇄
고한읍	고한리	부금산	01	태백선방향-정상	3.4	폐쇄
고한읍	고한리	함백산	01	만항재정상-함백산정상	3.6	폐쇄
사북리	사북리	고토재산	01	범바위주유소-정상-사북2리마을회 관	5.1	폐쇄
사북리	사북리	노나무재	01	백전초등학교-노나무재	3.9	폐쇄
사북리	사북리	노목산	01	백전교-정상	3.7	폐쇄
사북리	사북리	두치산	01	조양빌라-정상-제우스모텔	3.4	폐쇄
사북읍	직전리	신기산	01	직전1리마을회관-정상-애경레지콘	1.9	폐쇄
신동읍	덕천리	백운산	01	점재마을-정상-제장마을	6.7	개방
화암면	화암리	각희산	01	화암동굴매표소-정상-비슬이재	4.9	폐쇄
화암면	화암리	각희산	01-01	정상-문치	1.1	폐쇄
화암면	화암리	각희산	01-02	정상-화포교	2.1	폐쇄
화암면	화암리	행산	01	수원가든-정상-그림바위호텔	2.4	폐쇄
화암면	몰운리	몰운대	01	몰운1리새마을회관-화암약수	3.3	폐쇄
화암면	몰운리	지역산	01	민동산로방향-정상	2.8	폐쇄
화암리	석곡리	군의산	01	석곡주유소-정상-구슬동길	4.2	폐쇄
남면	문곡리	벽암산	01	젯말랑휴게소-정상	1.2	폐쇄
남면	낙동리	백이산	01	낙동교방향-정상	2.0	폐쇄
남면	낙동리	배거른산	01	낙동교-정상-연곡길	2.6	폐쇄
남면	광덕리	천마산	01	광락로-정상	2.5	폐쇄
남면	유평리	민동산	01	증산초교-정상-불암사	10.1	개방
남면	유평리	민동산	01-01	주노선-고병골	2.3	개방

남면	무릉리	민동산	01-02	능전-정상	3.3	개방
북평면	문곡리	상정바위	01	강릉여인숙-상정바위-선양교회	6.9	폐쇄
북평면	문곡리	상정바위	01-01	강변콘도민박-상정바위	4.0	폐쇄
임계면	낙천리	가랭이산	01	임계낙천-정상	2.4	폐쇄
임계면	고양리	고양산	01	고양리고창골-고양리노인정	7.1	폐쇄
임계면	고양리	노나무골산	01	적목동길-정상	1.1	폐쇄
임계면	화성리	도름산	01	임계화성분교-정상-관마을교	2.0	폐쇄
임계면	봉산리	마산봉	01	임계중고-정상-봉봉카정비소	2.8	폐쇄
임계면	덕암리	무내골산	01	덕암2교방향-정상-토암교회방향	1.5	폐쇄
임계면	송계리	보안산	01	태봉2교방향-정상-동백주유소	2.5	폐쇄
임계면	송계리	수패봉	01	송원동길-정상-송원동길	4.6	폐쇄

정선군 고시 제2019-34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이 확인되어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20일

정 선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연번	도로명주소	폐 지 일	폐지사유	비 고 (관련지번)
1	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락로 1346-17	2019. 2. 18.	건물 멸실	남면 광덕리 626
2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4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756
3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용수길 7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178-19
4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46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91-7
5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48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91-7
6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52-4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91-7
7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52-5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91-29
8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52-6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71-4
9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82-2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72-26
10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86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71-32
11	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5길 92	2019. 2. 18.	건물 멸실	신동읍 예미리 269-10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(☎560-2184)에 문의
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고시 제2019-35호

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

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「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」에 대하여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21일

정 선 군 수

1. 사업의 위치 :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외 배후마을
2. 사업의 명칭 및 목적
 - 가) 명 칭 : 임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 - 나) 목 적 :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3. 주요사업 내용
 - 가) 기초생활기반 : 임계건강공동홈, 백두대간임계역사문화관, 임계야외교류마당 조성
 - 나) 지역경관개선 : 백두대간 능금뚝기쉼터, 백두대간 능금가로길, 임계천 생태친수공간 조성
 - 다) 지역역량강화 : 주민교육, 지역활성화사업, ICT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
4. 사 업 비 : 5,846백만원[국비4,092 지방비1,754]
5. 사업시행기간 : 2018. 01. ~ 2021. 12.(4년)
6. 기대효과
 - 가) 거리경관의 개선으로 인한 지역이미지의 제고
 - 나) 농촌문화관광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
 - 다) 지역활성화 요소의 수립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기대
 - 라) 임계면 전체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및 경제활력 발전요인 제공
7. 사업시행자 : 정선군수
8. 위(수)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

※ 기타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정선군도시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 가능
(정선군도시과 도시개발담당 ☎033-560-2464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9-156호

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8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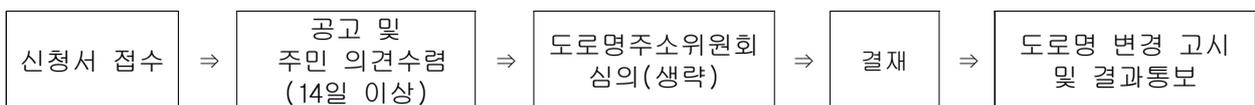
정 선 군 수

- 1. 공고기간 : 2019. 2. 8. ~ 2019. 2. 25.
- 2. 공고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
- 3. 공고내용 : 도로명 변경

구 분	변경 전		변경 후		변경 사유	비고
	도 로 명	기초번호	도 로 명	기초번호		
정선군	소금강로 (1차 종속구간)	548-1→ 548-48	석곡큰골길	1→48	큰골이라는 자연지명 인용	
	옴모탕이길	1→152	오음동길	1→152	예부터 5가지 아름다운 음을 가진 동네라는 뜻의 지명인용	

※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

4. 도로명의 변경 절차



※ 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

5. 의견제출

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불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문의전화 : 033-560-2184
- 제출방법 : 방문 및 우편
-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제 출 처 :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

정선군 공고 제2019-199호

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공고

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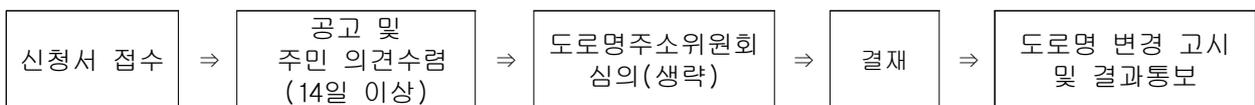
정 선 군 수

- 1. 공고기간 : 2019. 2. 20. ~ 2019. 3. 7.
- 2. 공고방법 : 군보 및 군 홈페이지
- 3. 공고내용 : 도로명 변경

구 분	변경 전		변경 후		도로명 부여(변경) 사유	비 고
	도로명	기초번호	도로명	기초번호		
정선군	서동로 (1차종속구간)	2979-1→ 2979-274	달뜰골길	1→274	마을이 높은 곳에 위치해 달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라는 뜻의 자연지명 인용	긴종속구간 도로명부여

※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도면 참조

4. 도로명의 변경 절차



※ 『도로명주소법』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하여 신청 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심의 생략

5. 의견제출

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문의전화 : 033-560-2184
- 제출방법 : 방문 및 우편
-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
- 제 출 처 :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

도로명 변경 관련 주민 의견서

의견제출자	성명	전화번호
	주소	

- ※ 도로명 :
- ※ 의견 및 사유 :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9. . .

신청인 : (서명)

정 선 군 수 귀하